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3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안상훈 · 안철수 · 김성원
조정훈 · 김용태 · 김재섭
백종헌 · 박성훈 · 고동진
김 건 · 김은혜 · 이성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할 시 결과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제3항제2호 신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계획안(이하 “정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받은 정비계획안을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비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

2. 제19조의2제6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통합 · 폐지 등 정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 폐지 등 정비에 관한 계획안(이하 “정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받은 정비계획안을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u>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비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3. (생략)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u>2.</u> (생략) ④ (생략)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u>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u> 5. ~ 13.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u>2. 제19조의2제6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u>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